#### 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피고 대여금채무 보증목적으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부도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대여금 청구의 소

#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그 중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, 소외 주식회사 ◈◈산 업 대표 ◈◈◈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, 원고에게 배서·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들의 최후 소지인이 되었습니다.

#### 다 음



종	류	금	액	ス	() ·	급	지	발	행	일
가계	수표	00	) () 원	(주)	00은	·행 (	○○지점	200	0.0.	Ο.
가계	수표	0 0	) () 원	(주)	00은	·행 (	○○지점	200	0.0.	Ο.
당좌	수표	0 0	) () 원	(주)	00은	·행 (	○○지점	200	0.0.	Ο.
당좌	수표	00	) () 원	(주)	00은	·행 (	○○지점	200	0.0.	Ο.

- 2.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지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,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○○○원 및 그 중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, 금 ○○○원에 대하여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 1. 갑 제1호증의 1, 2
 가계수표앞면 및 뒷면

 1. 갑 제2호증의 1, 2
 당좌수표앞면 및 뒷면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원고
 ○○○
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,^^			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	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		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					
기 타	•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수 있고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6378 판결), 이미 존재하는 금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(대법원 1976. 11. 23. 고 76다1391 판결), 이러한 이치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도 동일함.					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